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단속 불수용 이의신청 건

□ 신청 취지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민원신고 불수용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인천광역시 △△청장이 2023. △. △.에 한 신청인의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불수용 처리의 철회를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바닥면에 구획선과 문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주차구역이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분되는 바닥색이더라도 문자 표시가 없는 충전구역은 내연기관 차량도 주차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즉, 바닥색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문자 표시의 존부로 가려짐
- 충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 문자가 없거나 훼손된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닥면 문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민원 불수용 처리. 현행 주차단속 기준으로 '완전한 문자 표시'이 존재할 것이 요구됨. 즉, 전용주차구역임을 미리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해석·집행되고 있음

□ 사실관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구획선 및 문자로 표시한 주차구역이지만, 민원신고 시 바닥면 문자 표시가 주차된 차량에 의해 가려져 촬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임.
-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부칙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바닥면 문자 표시

충전구역과 미표시 충전구역을 병행 운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주차구역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정한 “일반차량 주차 가능” 주차구역이 상존함. 즉,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일반차량 주차가 허용된 경우가 존재하며, 동일한 충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 표시가 되어있는 충전구역과 아닌 구역이 동시에 존재함.

- 「친환경자동차법」등의 근거법령을 준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단일색상이 아니라, 연두, 분홍, 회색,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고, 일단 색상으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는 표시를 한 번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자 표시를 해놓은 주차구역과 아닌 주차구역이 함께 존재하고, 더하여, 충전구역 내에도 일반차량의 주차가 허용된 예외적인 구역도 존재함. 즉, 바닥면 색상만으로 친환경주차구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관계 법령 등

-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부칙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판단 및 결론

-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주차구역의 바닥면 색상만으로, 운전자가 친환경주차구역으로 식별하여,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됨을 미리 인지하거나, 민원신고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증빙자료로 삼기 어려움. 달리 말해, 일반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구역 바닥색만으로 주차금지 구역임을 미리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울뿐더러, 민원신고인 입장에서도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당시, 바닥색 이외 주차위반 의심차량과 함께, 한 화면에 여타 위반을 소명할 사실을 촬영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주차신고에 대한 수용/불소용처리 여하에 따라,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청인의 불법주정차 단속사실의 인정여부가 달라짐은

물론, 피단속 차량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침익적 행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의 판단에 있어, 주차단속 등 주민신고제의 실효성 확보와 동시에 피단속 일반차량운전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즉, 고충처리결과가 신청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단속 차량 등에 계고, 과태료 부과 등 침익적 행정행위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표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의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피단속 일반차량운전자 과태료 부과 측면에서, 일반 도로교통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등의 근거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민원 수용/불수용 판단 기준은 엄격해석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 집행하여야 함. 일반차량운전자가 해당 주차구역이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으로서 주차금지구역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주차금지 문구 등이 존재할 것을 현행 요건으로 하고 있음. 즉, 현행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를 때, 전용주차구역 문자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 문자가 훼손되어서도 안될 정도로 불법주정차 판단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법령 기준이 위와 같이 엄격하다면, 불법주차 민원신고의 실효성 확보 측면만 고려하여 피단속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그렇다면 신청인의 불법주차 차량 단속 당시, 사진촬영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더라도, 친환경 주차구역 등의 문구가 해당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 당시의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단속 차량운전자의 이익까지 두루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증빙자료는 위반여부를 가리기에 불충분하여 불수용 대상이라는 신청인의 답변은 타당함.
- 이 사건에만 한정한다면, 본 불법주차 민원신고의 증빙자료가 충분한지 여부 및 해당 차량의 불법주정차 여부를 △△청이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님.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이 없는 때 등 바닥면 문자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방문조사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함. 그러나 불법주차 민원신고의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때마다 관련 공무원이 해당 주차장을 매번 방문하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주민의 자율성이라는 주민신고제의 기본 취지에 반할 가능성도 존재함.

- 마지막으로, 피단속 일반차량의 입장,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 이어, 주차신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보면, 그 구별표식이 주차구역 바닥면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해당 바닥면 위로 차량이 주차한 이후에는 친환경 주차구역 문자 표식이 모두 가려지는 문제점이 있음. 불법주차 민원신고인의 입장에서, 단속대상 차량의 바닥면은 늘 가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불법주정차 상태인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차량 정면 사진의 촬영만으로는 바닥면의 전용구역 표식을 함께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실효성 확보의 차원에서, 단속차량 촬영이 용이하도록 주차구역 구별표식의 개선이 필요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인천 △구 △△동 아스콘 포장 관련 감사 요청

□ 신청 취지

-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국유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유)인 △△△ 일부구간과 △△△-△, △△△번지 전 구간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고충민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의 주택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가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 불법으로 시행한 △△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상에 설치한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임.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청인의 배수처리 민원내용 해소를 위하여 신청인과 도로포장공사 시행자 간 조정 수차례 시도하였음.
- △△△△과에 문의한 결과 도로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도로포장으로 인하여 국유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상승하고,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철거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를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는 없음

□ 사실관계

- 본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과의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는 물론 신청인과 도로포장공사 시행자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 도로포장공사 후 비가 많이 올 경우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신청인의 주택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을 확인하였음.
 -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유로는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는 있음
 - ①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도로인근의 토지에 건축물 설치 허가신청 용이
 - ②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도로인근 농토의 영농에 편리

□ 관계 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도시개발법 제9조

□ 판단 및 결론

- 본건 민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도로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회의 판단 사항이 아님. 따라서 본 건에서는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 도로에 관하여만 판단함.
-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동 , △△△-△) 중 현황 상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기존 도로에 농지소유자들이 공사비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도로 인근 농토의 영농에 편리를 기하고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보임.
-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후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

의 작성) 규정에 의거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공람·공고된 구역내 농지에 신규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의 건축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허가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로포장공사가 개인의 영리도모 차원의 단순 건축허가를 위한 불법 개발행위로 단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

-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도로의 활용가치가 상승하여 일부 주민들의 복리가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다는 점, 해당 국유지 도로는 △△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는 없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1호와 제3호,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등의 조항을 유추해석해 볼 때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강제하기보다는 신청인 등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이미 설치된 도로포장을 원상복구 하기보다는 해당 국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포장된 도로를 불특정다수인이 영농 행위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도로포장으로 인해 관련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신청인의 자택 인근 배수시설 설치 요구 사항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도로포장시행자 및 피신청인(△△청 ▽▽과)이 합의하여 본 건을 해결할 것을 “의견표명” 함.